

제406회 임시회
' 23. 1. 18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정일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1월 6일
- 회부일자 : 2023년 1월 6일

3. 제안이유

- 의료비후불제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도내 65세이상 노인 및 초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 더 많은 도내 보건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선제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여 도민의 건강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확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지원신청 자격 및 대상자 선정 확대(안 제5조)
 - (현행) 만 65세 이상 이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 - (변경) 65세 이상 노인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국가유공자, 장애인
- 초 수급대상자로의 대상 확대에 따른 대리 신청 자격 변경(안 제10조)
 - (현행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 대리 신청 가능
 - (변경)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, 후견인 대리 신청 가능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작년 12월30일 제정된 「충청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용자지원 조례」의 내용 중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리 신청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자 제출됨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5조는,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(이하 “대상자”라 함)를 확대하려는 것임.
 - 현행 조례에서는,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자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인, 국가유공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사실상 조례에 따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65세 이상 고령자로만 제한하고 있는 반면,
 - 개정안은,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중에서 질병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대상자에 포함되었고, 경제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장애인, 국가유공자의 경우 연령제한 없이 대상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여 도 내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.
 - 이에 조례에 따른 대상자 수가 현행 112,358명에서 440,549명으로 4배 정도 확대되었음.

※ 대상자 확대 : (현행) 112,358명 → (개정안)440,549명(증 328,191명)

현 행	개 정 안 * 중복인원 제거
①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(31,915명)	① 65세 이상 노인(314,485명)
②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(10,311명)	② 기초생활수급자(46,638명)
③ 만 65세 이상 장애인(50,195명)	③ 차상위계층(25,913명)
④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(19,937명)	④ 장애인(47,012명)
	⑤ 국가유공자(6,501명)

- 대상자의 확대는, 충북도 내 질병 치료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에게 수술 또는 시술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용자지원을 통해 적기에 치료를 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, 지원을 필요로 하는 다수의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상 긍정적이며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안 제10조는, 지원 신청에 있어 거동불편, 장애 등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대리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기준에 “신청인 본인의 후견인”을 추가한 것임.
- 후견인제도는 장애, 질병, 노령 등으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조례에 따른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, 형제·자매가 없거나 대리 신청이 곤란한 경우, 「민법」상 성년·피성년 후견인 및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⁷⁾ 등에 따른 후견인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, 의료비 용자지원 신청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대리 신청 자격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,
 -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함.
- 다만,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한 대상자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 사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7) 「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」 제3조(후견인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·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.